

1. 개정이유

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단순 발급 교육수료증명서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교육수료증명서 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사항을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 및 삭제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규정에서 교육수료증명서에 기재 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규정 내 교육수료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재사항 삭제(안 별표 5 제2호아목)
- 나.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교육 수료증 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주소 기재란 삭제(안 별지 제2호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
지정요령 일부개정고시안
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아. 전문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피교육생에게 별지 제2호
서식에 따라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[별표 5]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규정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1호제나목에서 정한 학사운영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가.~라. (생략)</p> <p>아. <u>수료증명서 발급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(1) <u>전문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피교육생에게는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(2) <u>교육수료증명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(가) <u>전문교육기관의 명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(나) <u>수료증명서 발급 일련번호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(다) <u>수료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</u> (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생년월일) <u>및 현주소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(라) <u>수료한 교육과정명(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수료를 명기할 것)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(마) <u>교육과정을 만족하게 수료했다는 내용의 진술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(바) <u>수료증명서 발급 연월일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(사) <u>수료증명서 발급자의 직책·성명 및 직인</u></p>	<p>[별표 5]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/p> <p>가.~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아. <u>전문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피교육생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/u></p>